

# 세계는 지금

### 일본 후생노동성, 제네릭 의약품 가격 인하를 통한 의료비 절감 결정

지난 10월 6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2년 진료보수 개정에서 특허기간이 만료된 후 처음으로 발매되는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현행 신약의 70% 보다 인하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신약과의 가격차를 확대함으로써,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보급을 촉진하고 의료비 절감으로 연결한다는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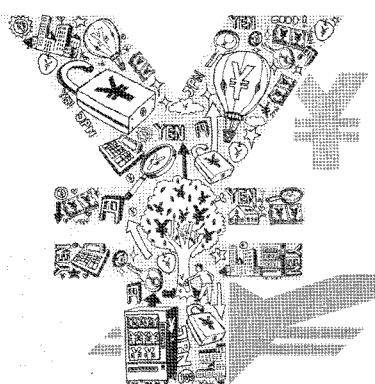
일본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점유율은 2009년 9월 20.2%로 나타나, 이는 미국과 유럽보다 낮은 수준이다. 후생노동성은 제네릭 의약품을 확대하는 것이 의료비 절감의 주 방안이며, 2012년까지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의 약가(藥價)전문부회에 제네릭 의약품의 적정 가격 검토를 제안하였다. (부회 위원들의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신약의 60% 정도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함)

하나의 신약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이 20종이 넘고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제네릭 의약품의 보급을 막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품목 수나 가격차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제네릭 의약품은 효능이나 효과가 신약과 동등한 상태에서 제조 판매가 승인되는 것으로, 개발비가 들지 않아 약값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출처 [sankei.jp.msn.com](http://sankei.jp.msn.com)



### 미국 특허상표청, 녹색기술 시범프로그램을 통한 500번째 특허 허여

지난 10월 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녹색기술 시범프로그램을 통한 500번째 특허를 General Electric(GE)社의 특허에 허여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허는 GE社가 녹색기술 시범프로그램을 통하여 등록한 116번째 특허로, 공기역학적 소형날개를 부착한 풍력 발전 기기의 회전 날개(No.8,029,241)에 대한 특허이다.

녹색기술 시범프로그램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절약, 환경 기준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추가비용 없이 신속하게 심사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2010년 11월, USPTO는 이 프로그램에 따른 출원 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2009년 12월, 해당 시범프로그램이 실시된 이래 2,500건 이상의 특허출원이 녹색기술 출원으로서 인증 받음)

통계자료에 따르면, 녹색기술 시범프로그램을 통한 출원은 통상의 심사 과정보다 빠른 시일 내에 특허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USPTO가 대체연료, 청정에너지, 녹색기술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USPTO는 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구축에 대한 노력을 증진함으로써, 추가적인 혁신을 촉진하고 유해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GE社의 Carl Horton 지식재산 수석변호사는 USPTO가 녹색기술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를 가속화하기 위해 이 시범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을 지지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은 녹색기술 분야에서 활약하는 GE社 및 기타 업체들이 보다 빨리 시장에 기술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 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경제성장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www.uspto.g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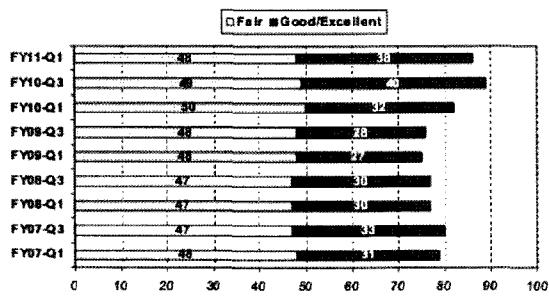
## 미국 특허상표청, 심사품질 조사 결과 보고

지난 10월 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지속적인 특허품질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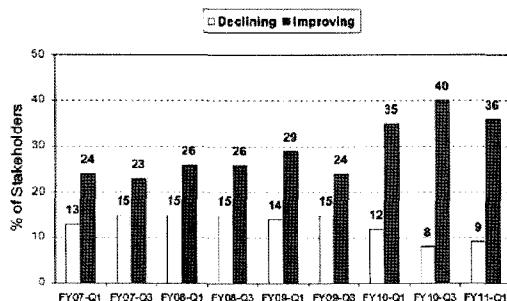
USPTO는 2006년부터 USPTO와 이전 해에 업무를 한 실무가, 발명가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년에 두 번씩 외부품질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피드백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조사는 심사품질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80%가 넘는 이해관계자들이 심사가 공정하거나 우수하다고 평가함. 이는 2009년 10월 결과보다 높은 수준임
- 2007 회계연도 1분기의 이해관계자들은 심사품질이 더 향상되었다고 24%가 응답하였으나 2011 회계연도 1분기에는 36%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함
- 심사품질의 수준이 저하되었다는 평가는 2007 회계연도 1분기에 13%에서 2011 회계연도 1분기에 9%로 하락함



〈표1〉 2011 심사품질에 대한 인식 정도



〈표2〉 2011 심사품질에 대한 인식의 변화

출처 <http://www.uspto.gov>

## 영국 지식재산청, 온라인 특허검색 툴 「Ipsum」 개시 발표

지난 10월 6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PO)은 온라인 특허검색 툴인 「Ipsum」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Ipsum은 특허 등록 및 출원서 관련 정보검색 서비스이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연구기관 및 특허 변호사, 특허 출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잠재적 발명인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Ipsum 이전에는 요청문서 당 5파운드가 소요되었으며, 배송시간을 감안하면 문서를 수령할 때쯤엔 이미 해당 문서가 쓸모없게 되기도 하였다.

영국 사업기술혁신부 Baroness Wilcox 지식재산장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무료 서비스인

Ipsum은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주고, 전 세계 특허 심사관들 역시 UKIPPO의 특허 등록 및 미등록 사유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세계적인 특허심사 적체현상을 줄임으로써 타국에서 특허처리가 빠르게 이뤄지기를 희망하는 영국 기업들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Ipsum은 영국 지식재산제도에 대한 Ian Hargreaves의 보고서(“지식재산과 성장”, 5월)에 나타난 여러 우려사항에 대해 해결책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제시한 모든 권고안을 수용하였고, 이 중

# 세계는 지금

Ipsum은 특허 품질의 개선을 위해서 특허심사 적체현상을 줄여야 한다는 권고에 대한 조치에 해당한다.

출처 <http://www.ipo.gov.uk>

### 영국 고등법원, Halliburton社의 소프트웨어 특허적격성 인정

지난 10월 5일,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의 유전 서비스 기업인 Halliburton社의 디자인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특허적격성(patentability)을 인정하였다.

Halliburton社의 디자인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드릴 비트(drill bit)를 제작하는데 사용된다. 과거 Halliburton社는 영국 지식재산청(UK IPO)에 4개의 특허출원을 신청했지만 해당 발명이 "정신적 활동(mental act)"을 수행하는 방법을 담고 있어 특허등록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즉, Halliburton社의 발명품은 엔지니어가 자신의 머리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단순히 자동화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특허가 거부되었다. 그러나 고등법원의 Birss 판사는 당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가 아닌 그 이상이며, 인간의 사고과정을 뛰어넘

는 드릴 비트(drill bit)를 디자인하는 방식이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컴퓨터 실행 발명"은 영국에서 특허등록이 가능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대한 유럽 특허청(EPO)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번 판결로 영국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획득이 용이해졌다라는 평가이다. 이것은 Ian Hargreaves의 보고서 ("지식재산과 성장", 5월)에서 소프트웨어 발명에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 영국의 관행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권고에 상반되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http://www.zdnet.co.uk>

### 호주 연방법원,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지난 10월 13일, 호주 연방법원은 Apple社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양사의 특허권 논쟁이 앞으로 재판에서 해결될 때까지 호주에서 삼성전자의 태블릿PC인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잠정적으로 금지한다고 판결하였다.

Apple社는 지난 7월, 호주에서 아이패드2의 경쟁제품이 될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현지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

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휴리스틱」기술과 「멀티터치」기술이었으나 호주 법원이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다.

「휴리스틱」은 사용자의 터치 동작을 분석해 정확히 수평·수직으로 화면을 쓸어 넘기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의도를 알아내는 기술이고, 「멀티터치」는 스크린을 두 개 이상의 손가락으로 터치하더라도 이를 각각 인식해 확대·축소와 회전 등 다양한 동작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며 9개국에서 벌어지는 약 30건의 소송 중 일부일 뿐이라며 삼성전자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16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법원에 Apple社를 상대로 통신표준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